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4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보육비 상승이 우려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19조)

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및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일몰기간 연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인프라 유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향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285억원(연평균 428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개정안 제22조의2)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최근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 및 이에 따른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지원 및 다자녀 양육자의 양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